

철본매조필

철본매조필
철본매조필
철본매조필
철본매조필
철본매조필

기
호명 30321-1

974
철본매조필

89. 6.

청정
기성비
추천과장
추천대상
유병태

(제 1 안)
내부결재

수업개발제발 급우 제1국역제1기우 제개발조합정관 인부 제정인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712호(86.3.18)로 수업개발제 개발 조 합정인 및
사업시행인가되고 같은고시 제677호(88.8.12)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급우 제1국역
제1기우 제개발조합으로 부터 정관임부변경 인가신청이 있어, 서울특별시공고 제497
호(89.5.27)로 공람공고를 필하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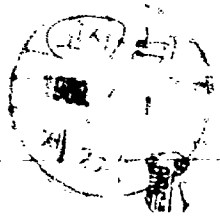
2. 도서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인가 및 고시하고 별안 시행코저
합니다.

첨 부 : 1) 고시문 1부.

2) 정관변경(안) 1부. 관.

(제 2 안)

1032



수 신 : 성동구 응봉동 134-5 주택개량제개발 금오제1구역제1지구제1차조합장

문정면 귀하

제 목 : 권은권

1. 귀 조합에서 신청한 주택개량제개발 금오제1구역제1지구제1차조합장 조합정관 일부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및 첨부 같이 변경인가가니 변경인가된 정관을 법인등기 조치하고 등기부등본 2부 첨부 결과 보고 하시기 바라며.

2. 동 고시내용과 같이 정관변경내용을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1) 고시문 기본 1부.

2) 정관변경(안) 1부. 1권.

(제 3 안)

수 신 : 총무처장관(공보관)

제 목 : 관(시)보 게재 의뢰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712호(86.3.18)로 사업시행인가되고 같은고시 제677호(88.8.12)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주택개량제개발 금오제1구역제1지구제1차조합의 정관을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일부 변경인가하고 고시이 고적 관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고시문 1부. 끝.

(제 4 안)

수 신 : 수신처참조

발 신 : 성동구청장

제 목 : 조합정관 일부 변경인가 보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712호(86.3.18)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
되고 같은고시 제677호(88.8.12)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된 우리시(구) 주택개발청
개발금모체1구역제1지구 재개발조합으로 부터 정관 일부 변경인가 신청에 따라 도시
재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정관 일부 변경인가하고 별첨과 같이 보고 합니다.

수신처 : 건설부장관(도시개발과장), 서울특별시(주택개발과장)

첨 부 : 1) 고시안 사본 1부.

2) 정관변경(안) 1부. 끝.

(제 5 안)

수 신 : 용봉동청

발 신 : 성동구청장

제 목 : 관 은 건

1. 주택30321-18529(89.5.26)우와 관련임.

2. 위안에 의해 동일지구인 주택개발청개발금모체1구역제1지구 재개발
조합청과 관공청에게 신청 받은 관공청에 관공청 관공청의 관공청에
이제 관공청에 관공청에 관공청.

첨 부 : 1) 고시안 사본 1부.

2) 정관변경(안) 1부. 1부.

제 목 :

신 호 : 서울특별시

발 행 처 : 서울특별시

참 조 : 시민과장

제 목 : 식인날인 의뢰

1. 우리구 주택개발제한구역제1구역제1지구 재개발 조합청관 일부 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토석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식인날인 의뢰오니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식인날인애수 : 공문서 2부. 1부.

고 시 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22호

주택개발제한구역 제1구역 제1지구 종합정합 일부 변경인가

1. 서울특별시 도시 제712호(86.3.18)와 주택개발제한구역 종합정합 및 사업시행 인가되고 같은 도시 제677호(88.8.12)와 사업시행변경인가된 같은 제1구역 제1지구 제개발조합의 정관을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와 같이 일부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변경된 정관내용은 주택개발제한구역 제1구역 제1지구 제개발조합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한다.

1989. 7. 1.

서울특별시 상

가) 인가내용

- 1) 제개발사업의명칭 : 주택개발제한구역 제1구역 제1지구 종합정합 일부 변경인가
- 2) 시행구역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봉동 134-5번지(약 21,066㎡)
- 3) 시행기관 : 86.3.18 - 89.12.31.
- 4) 정관일부변경인가년월일 : 89. 7. 1.
- 5) 시행자의 주소, 성명 : 성동구 용봉동 134-5
같은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발제한구역 종합정합
은 상 언
- 6) 정관일부변경인가내역 (일부생략)

변 경 전	변 경 후
제29조 관리처분계획 기준 1항-6항	제1항-제6항 동일 제7항 국민주택규모(전용기준 85㎡)이하 아파트의 명명배정은 조합원이 신청하는 대로 희망명칭을 배정 할 수 있되 분양기준 미액준으로 배정하여야 한다

- 7) 변경사유 : 주택개발제한구역 업무처짐 계정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명명배정은 조합원이 희망하는 대로 명칭을 배정 할 수 있도록 정관일부변경

상 조 번 공 기

번	번
<p>제3조 (시행규칙 및 면적) 조합의 시행 일 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서울 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34번지 5호의 207평지 21,163평방미터로 한다.</p>	<p>제3조 (시행규칙 및 면적) 조합의 시행일 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34번지5호의 253평지 21,066평방미터로 한다.</p>
<p>제7조 (조합원의 자격등) 제1항 - 제8항 (1) 1985.8.13. 이전부터</p>	<p>제1항 - 제8항 동일 (1) 1985.8.16. 이전부터</p>
<p>제10조 (임 원) 3.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총회결의가 있을 경우</p>	<p>제10조 (임 원) 3.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총회결의가 있을 경우 연임할 수 있다.</p>
<p>제13조 (총회결의사항) 1항 - 11항</p>	<p>1-11항 동일 12항 조합의 예산은 대의원회의 추천한 임원 예산에 결의하여야 한다.</p>
<p>제29조 (권리서분 계획기준) 1항 - 6항</p>	<p>제1항 - 제6항 동일 제7항 국민주택규모 (전용기준 85㎡) 이하 아파트 의 평형배정은 조합원의 신청하는 대로 평형별 을 배정할 수 있다 분양기준 다액 분양 배정하여야 한다.</p>
<p>제7항분양별은 아파트 동·층수의 결정은 아파트 평형별도 2군에서 우선적으로 공개추첨에 의하여, 추첨결과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</p>	<p>기준 7항을 8항으로 변경</p>